

의안번호	제 378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6월 일 (제 281 회)

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발 의 자	최광옥 의원 외 7인
발의연월일	2009년 6월 2일

##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(최광옥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7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6. 2.

제출자 : 최광옥, 임현, 최미애,  
김광수, 이범윤, 이종호,  
정윤숙, 최재옥

### 개정이유

- 이 조례는 1997.4.11. 정신보건법 제29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현재까지 존치되어 오고 있으나, 정신보건법령이 12회에 걸쳐 개정 정비됨에 따라 관계법령만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,
-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5조(운영세칙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2009.3.22. 동 조항 개정으로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.

### 참고자료

- 가. 의안전문 : 붙임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- 다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- 라. 관련부서 협의 : 의견 없음(보건위생과)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### ○ 정신보건법

제27조 (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)①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 위원회를,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 위원회를, 시장·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를 각각 둔다. 다만,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·군·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, 2008.3.21>

②제31조,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.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2008.3.21>

### ○ 정신보건법시행령

제15조 (운영세칙)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,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3.18>